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
조례(안)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이유

- 우리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
시범 자치구로 선정됨에 따라
-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 소요되는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일반직 5급 1명 증원 : 주민생활지원과 신설
- 일반직 6급 10명 증원 : 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
- 일반직 8급 정원조정 : 구분청: +16, 동: △16
- 일반직 9급 정원조정 : 구분청: +4, 보건소:+2, 동:△6
- 기능직 11명 감원 : 일반직으로 11명 증원

※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총 정원 변동없이 직급별 정원 조정

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19486호)제20조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(행자부령 제310호),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지침(자치제도팀-1428호)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
- 증원되는 인력중 5급 1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전산정보과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폐합 함으로써 늘어나는 1개 부서의 정원이며,
- 각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고자 6급으로 정원 10명을 증원하고, 나머지 12명은 구본청의 팀장이 아닌 6급(평주사)을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.
- 반면에 동사무소 정원중 8급: 16명, 9급: 6명 도합 22명을 감원하여 구 본청으로 8급:16명, 9급:4명을, 보건소로 9급 2명을 정원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6.6.5 통보된 서울특별시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결과 협의 통보에 의하면
 - 중랑구, 양천구, 구로구,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 모두 직급간 이동으로 행정6급의 정원채정 비율이 초과되고 있으나

-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조직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책정 비율이 초과하는 사항으로 인정하되,
-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8조 「별표5」의 기준에 합치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6. 22

보고자 : 김 찬 재

- 붙임 : 1. 관련법조문.
2. 영등포구의 직급별 정원 책정 현황.

관 련 법 조 문

□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

-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(대통령령 제19486호)

- 제20조 제1항
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
- 제21조 제2항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

(행정자치부령 제310호)

- 제8조 제1항
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4와 같다.
- 제8조 제2항
영 제16조 제2항 및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5와 같다.

영등포구의 직급별 정원 책정 현황

□ 일반직

구 분		계	4급 이상	5 급	6 급	7 급	8 급	9 급
기준구성비		100%	1%이내	7%이내	19%이내	29%이내	31%이내	13%이상
현정원	인원수 (명)	949	8	59	176	273	310	123
	구성비 (%)	100	0.8	6.2	18.5	28.8	32.7	13.0
개정안	인원수 (명)	960	8	60	186	273	310	123
	구성비 (%)	100	0.8	6.2	19.4	28.4	32.3	12.8

□ 기능직

구 분		계	6 급	7 급	8 급	9 급	10급
기준구성비		100%	3%이내	6%이내	14%이내	32%이내	45%이상
현정원	인원수 (명)	344	8	12	35	86	204
	구성비 (%)	100	2.3	3.5	10.2	25.1	59.7
개정안	인원수 (명)	333	8	18	44	87	187
	구성비 (%)	100	2.3	5.2	12.8	25.3	54.4